

『미국, 오리건주 청정 트럭 규칙 개정안』 심층분석 보고서

2025. 09.

TBT 통보 여부	통보	HS Code	8704
통보국	미국	전년도 수출규모 (천불)	4,535
작성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목 차]

1. 규제 개요	1
2. 개정 세부내용	2
3. 관련 법령 및 표준	11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25.7.10. 미국 오리건주 환경품질부(DEQ) 산하 정책 및 규칙제정 기관 환경품질위원회(EQC)는 연방 대기청정법(Clean Air Act) 제 177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엔진 및 차량 배출 기준을 반영한 오리건주 대형 엔진 및 차량 기준을 도입함

□ (규제요지) 오리건주 내 신규 대형 트럭과 엔진의 제조, 시험, 유통 및 판매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무공해차량(ZEV) 부족분의 보충 기간 연장, 배출권 생성 방식 정의, 대형(HHD) 엔진에 대한 유연성 등 규정을 일부 개정함

TBT 통보번호	USA/2123/REV.1	통보일	2025.07.15.
	/ADD.6	고시일	-
규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오리건주 청정 트럭 규칙 업데이트 2025 Updates to Oregon’s Clean Truck Rules 		
규제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리건주 환경품질부 Orego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요구사항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보호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제·개정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 최종안 		
채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07.10. 		
의견수렴 마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효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적용대상 및 수출규모)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비 엔진; 환경 보호(ICS 코드: 13.020); 운송 배기가스 배출(ICS 코드: 13.040.50) Heavy-duty engines; Environmental protection (ICS code(s): 13.020); Transport exhaust emissions (ICS code(s): 13.040.50)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형 및 대형 트럭, 엔진, 트레일러 제조사, 오리건주 트럭 딜러, 2024년 이후 모델 연도의 대형 엔진, 그리고 2025년 이후 모델 연도의 트럭과 트레일러가 오리건주 내에서 판매를 위해 인도되거나 판매되는 경우에 적용 		
對발행국 수출액 (전년기준, 천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4,535 	HS Co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8704

2

개정 세부내용

□ 오리건 행정 규정집(OAR) 개정 주요내용

- 캘리포니아 첨단 청정 트럭 규정 개정안을 채택하여 오리건주 청정 트럭 규칙 개정 내용을 포함한 오리건 행정 규정집(OAR) 340부를 일부 개정함
- OAR 340부 12(집행 절차 및 민사 처벌), OAR 340부 257(오리건주 저공해 및 무공해 차량)를 개정하고, 340부 261(신차 대형 트럭 배출기준)를 신규 채택함

□ 340부 12 집행 절차 및 민사 처벌 개정 주요 내용

- (OAR 340-012-0054) 대기질 위반 분류 등급 I 분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표 1] 등급 I 개정 세부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y)	오리건주 행정 규정집 340부 257에 명시된 오리건주 저공해 차량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제조업체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을 판매 목적으로 인도하는 경우,	오리건주 행정 규정집 340부 257에 명시된 오리건주 저공해 및 무공해 차량 규정을 위반하여 차량 제조업체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을 판매 목적으로 인도하는 경우,
(aa)	오리건주 행정 규정집 340부 257에 명시된 무공해 차량(ZEV) 판매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무공해 차량(ZEV) 판매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오리건주 행정 규정집 340부 257에 따른 신용 상황 및/또는 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nn)	<신설>	오리건주 행정 규정집 340부 261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새로운 고속도로용 대형 엔진, 트럭 또는 트레일러를 판매용으로 배송하는 경우

- (OAR 340-012-0054) 대기질 위반 등급 II 위반 분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표 2] 등급 II 개정 세부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u)	오리건주 행정 규정집 340-253-0100(7)에 따라 완전하고 정확한 분기별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오리건주 행정 규정집 340부 257에 명시된 오리건주 저공해 및 무공해 차량 규정을 위반하여 차량 제조업체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을 판매 목적으로 인도하는 경우,
(w)		오리건주 행정 규정집 340부 261에 명시된 신규 엔진, 트럭 및 트레일러에 대한 보고, 통지 또는 보증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OAR 340-012-0140) 기본 벌금 결정에서 등급 III 위반을 제외하고 OAR 340-012-0155에 규정된 대로 기본 벌금은 이 조항에 명시된 매트릭스에 위반의 등급과 규모를 적용하여 결정되며, 12,000달러 벌금 매트릭스 적용은 다음과 같이 개정됨

[표 3] 기본 벌금 결정 개정 세부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C)	제조업체가 오리건주 저공해 차량 규정(OAR 340-257)을 위반한 경우	차량 제조업체가 오리건주 저공해 및 무공해 차량 규정(OAR 340-257)을 위반한 경우
(Q)	다른 벌칙 매트릭스에 특별히 나열되지 않는 한, ORS 459장 위반 또는 고형 폐기물 법령, 규칙, 허가 또는 관련 명령을 위반한 경우 (i) 고형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 (ii) 가장 최근의 인구조사에 따라 인구가 25,000명 이상인 사람	다른 벌칙 매트릭스에 특별히 나열되지 않는 한, ORS 459장 위반 또는 고형 폐기물 법령, 규칙, 허가 또는 관련 명령을 위반한 경우 (i) 고형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 (ii) 가장 최근의 인구조사에 따라 인구가 25,000명 이상인 도시
(V)	<신설>	엔진, 트럭 또는 트레일러 제조업체 및 딜러가 오리건주 행정 규정집 340장 261에 따른 신규 대형 트럭의 배출 기준 규칙을 위반한 경우

□ 340부 257 오리건주 저공해 및 무공해 차량 개정 주요 내용

- (OAR 340-257-0010) 목적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표 4] 목적 개정 세부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목적	이 부의 목적은 연방 청정 대기법 177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차량 배출 기준을 이행하는 오리건주 저공해 및 무공해 차량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임 이 프로그램은 OAR 340-257-0050에 나열된 대로 오리건주에서 새로운 자동차의 제조, 유통 및 판매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함	이 부의 목적은 연방 청정 대기법 177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차량 배출 기준을 이행하는 오리건주 저공해 및 무공해 차량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임 이 프로그램은 OAR 340-257-0050에 나열된 대로 오리건주에서 새로운 자동차 및 트럭 의 제조, 유통 및 판매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함

- (OAR 340-257-0020) 동 규정의 적용 범위 및 발효 일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표 5] 적용 범위 및 발효 일정 개정 세부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1)	이 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및 자동차 제조사, 오리건주 자동차 판매업자, 그리고 오리건주 내에서 등록·리스·임대·판매를 위해 인도되거나 판매되는 2009년형 및 그 이후 모델 연도의 승용차, 경형 트럭, 중형 차량 및 중형 승용차에 적용되며 이에 대한 요건을 정함 단, OAR 340-257-0060 면제 조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함	이 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동차 제조사, 오리건주 자동차 판매업자, 그리고 오리건주 내에서 등록·리스·임대·판매를 위해 인도되거나 판매되는 2009년형 및 그 이후 모델 연도의 승용차, 경형 트럭, 중형 차량 및 중형 승용차에 적용되며 이에 대한 요건을 정함 단, OAR 340-257-0060 면제 조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함

(2)	<신설>	이 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형 및 대형 트럭 제조사, 오리건주 트럭 판매업자, 그리고 오리건주에서 생산되어 판매를 위해 인도되는 2025년형 및 그 이후 모델 연도의 중형 트럭 및 대형 트럭에 적용되며, OAR 340-257-0060 면제 조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함
(3)	<신설>	이 규칙 채택과 동시에 발효되는 일회성 차량단 보고 요구사항은, DEQ가 중형 및 대형 차량의 사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OAR 340-257-0200에 규정된 자에게 적용 됨

- (OAR 340-257-0040) 캘리포니아 차량 배출 기준 충족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표 6] 캘리포니아 차량 배출기준 충족 요구사항 개정 세부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2)	<신설>	2025년 모델 연도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의 각 모델 연도에 대해 해당 차량이 OAR 340-257-0050(1) 및 (3)에 따라 요구되는 캘리포니아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인증되지 않은 경우 어떤 차량도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인도할 수 없음 단, 340-257-0060에 명시된 경우는 예외임

- (OAR 340-257-0055) 첨단 청정 트럭 요구사항 시행 조항이 다음과 같이 신설 됨

[표 7] 첨단 청정 트럭 요구사항 개정 세부 내용

구분	개정안
적용	(1)조부터 (3)까지의 요구사항은 인용에 의해 OAR 340-257-0050(3)에 통합된 규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차량 제조사에게 적용됨
(1) 기록 감사	제조사는 보고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오리건주 내 차량 판매 기록을 DEQ에 제출해야 함 허위 정보 제출은 이 규정 위반임
(2) 정지, 취소 또는 수정 권한	DEQ가 ZEV 또는 NZEV 크레딧이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취득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크레딧은 무효로 간주되며, DEQ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크레딧을 정지,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있음
(3) 배출권 (Credit) 및 부족분 (Deficit) 요구사항 불이행에 따른 위반	제조사가 OAR 340-257-0050(3)(d)에 인용에 의해 통합된 CCR 제13편 제1963.3(c)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절한 양의 ZEV 또는 NZEV 배출권(credit)을 소멸(retire)하지 아니하고, CCR 제13편 제1963.3(b)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부족분(deficit)을 보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조사는 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됨 위반은 CCR 제13편 제1963.3(b)조에서 정한 기간 종료 시점까지 부족분이 상쇄되지 않은 때 발생한 것으로 봄 OAR 제340장 제12부에 따른 위반 건수 또는 민사 벌금액 산정 목적상, DEQ의 기준 또는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차량 대수는 제조사가 상쇄하지 못한 부족분과 같아야 함

- (OAR 340-257-0080) ZEV 판매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표 8] ZEV 판매 요구사항 개정 세부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3)	<신설>	2025년 모델 연도부터 모든 제조사는 CCR 제 13편 1963.1조에 포함된 ZEV 판매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OAR 340-257-0090) ZEV 크레딧 은행 및 보고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표 9] ZEV 크레딧 은행 및 보고 개정 세부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12)	<신설>	2022년 모델 연도부터 GWR이 8,500파운드를 초과하는 도로용 차량을 생산하는 모든 제조업체는 13 CCR 제1963.2조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ZEV 및 NZEV 크레딧을 생성, 이월 및 거래할 수 있음

- (OAR 340-257-0200) 플릿 보고 적용(Fleet Reporting Applicability) 조항이 다음과 같이 신설됨

[표 10] 플릿 보고 적용 개정 세부 내용

구분	개정안
(1)	<p>제(2)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은 OAR 340-270-0210에 명시된 모든 정보를 DEQ에 제출해야 함</p> <p>본 규칙에 따라, 공동 소유 또는 지배 하에 있는 자들이 수행하는 모든 작업은 통합되어 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플릿 보고 적용 여부를 결정함</p> <p>(a) 자회사, 사업부, 지점 등 모든 매출을 포함하여 2021 과세 연도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총 연간 매출이 5,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체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자로서, 2021년에 오리건주에서 총차량중량등급(GVWR) 8,500파운드를 초과하는 차량 1대 이상을 운행한 시설을 운영한 자</p> <p>(b) 오리건주 내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며, 2021년 기준으로 총 차량중량등급(GVWR) 8,500 파운드를 초과하는 차량 5대 이상을 소유하거나 운행한 모든 자</p> <p>(c) 2021년 기준으로 오리건주 내 시설을 운영하면서, 총 차량중량등급(GVWR) 8,500파운드를 초과하는 차량 5대 이상을 오리건주 내로 또는 오리건주 전역에 배치한 모든 자</p> <p>(d) 2021년 오리건주에서 GVWR이 8,500파운드를 초과하는 차량을 5대 이상 운행한 주 정부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오리건주 정부 기관.</p> <p>(e) 2021년 오리건주에서 GVWR이 8,500파운드 이상인 차량을 5대 이상 운행한 모든 연방 정부 기관</p>
(2)	<p>다음 차량 및 사람은 보고 요구사항에서 면제되며 제(1)항의 적용 요구사항 또는 OAR 340-257-0210의 보고 요구사항의 목적을 위해 산정하거나 보고에 포함하지 않음</p> <p>(a) 미국 국방부 또는 미국 군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군용 전술 차량 및 군용 전술 시설</p> <p>(b) 판매 대기 중인 차량</p> <p>(c) 긴급 차량</p>

○ (OAR 340-257-0210) 일반 요구사항 조항이 다음과 같이 신설됨

[표 11] 일반 요구사항 개정 세부 내용

구분	개정안
(1)	본 규칙에 따라 보고 의무가 있는 모든 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정보를 해당 부처에 보고해야 함
(2)	자회사, 모회사 또는 합작 회사는 총 차량중량등급(GVWR) 8,500파운드를 초과하는 각 차량에 대해 독립적으로 정보를 보고할 수 있음 또는 모회사나 합작 회사가 자회사를 대신하여 보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모든 자회사, 모회사, 합작 회사의 총중량차량 8,500파운드 초과 차량에 대한 정보가 모두 보고되어야 함
(3)	OAR 340-257-0200부터 340-257-0220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로서, 중개(brokerage) 또는 운송업자(motor carrier)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4)	공동 소유권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차량과 관련된 정보는 각 플릿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음
(5)	플릿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의 임의의 날짜를 기준으로 플릿 구성 차량 데이터를 보고할 수 있음
(6)	DEQ에 제출된 모든 정보는 공개 정보로 간주되나, 제출자가 OAR 340-214-0130에 따라 기밀성을 주장하거나, 오리건 공공기록법, ORS 192.311~192.478에 따라 기밀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OAR 340-257-0220) 플릿 보고 요구사항 조항이 신설되어 OAR 340-257-0200에 따라 보고 의무가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정보 보고의 의무를 가짐

[표 12] 플릿 보고 요구사항 개정 세부 내용

구분	개정안
(1)	(a) 이름(예: 사업체인 경우, 등록된 사업체명)과 해당 자가 사용하는 모든 영업명(즉, 모든 가명("dba"(doing business as))을 포함함 (b) 도로명 또는 사서함, 시, 주, 우편번호를 포함한 우편 주소 (c) 책임자 이름 (d) 책임자 이메일 주소 (e) 책임자의 전화번호 (f) 해당되는 경우, 모회사 또는 지배 기관의 이름 (g) 보고 대상자가 공동 소유권 또는 지배 하에 차량을 보유한 모회사 또는 기타 자와 관련된 연방 납세자 식별번호 (h) 정부 기관의 경우 관할권(연방, 주 또는 지방) (i) 연방 납세자 식별 번호 (j) 6자리의 기본 북미 산업분류체계 코드 (k) 비정부 기관의 경우, 2021년 기준 미국 내 총 연간 매출액 (l)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 소관 중개인 권한 (m) 자동차 운송업체 식별 번호, 미국 교통부 번호, 국제 등록 계획 번호를 포함한 운영 허가 번호 (n) 2021년에 총 차량중량등급(GVWR) 8,500파운드를 초과하는 차량을 사용하여 오리건주에서 물품을 배송하거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고 대상자가 계약을 맺은 계약 상대방의 수 (o) 하청업체(Subhauler) 추정 숫자, 해당 하청업체들이 운영하는 차량 추정 대수, 그리고 해당 하청업체 차량 중 보고 대상자의 권한 하에서 운행된 차량의 추정 대수

	(p) 2021년 오리건주에서 보고 대상자가 소유하고 운영한 GVWR이 8,500파운드를 초과하는 차량 중 오리건주에 차량 본거지가 없는 차량 수
(2)	<p>보고 의무가 있는 자는 차량 본거지(vehicle home base)에 대한 일반 정보를 보고해야 함</p> <p>연간 주행 거리의 대부분을 오리건주에서 운행하지만 특정 위치에 배정되지 않은 차량은, 보고 대상자의 본사(headquarters) 또는 차량 운행이 관리되는 다른 위치의 일부로 보고해야 함</p> <p>보고 대상자는 각 차량 본거지별로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도로명, 시, 주, 우편번호를 포함한 시설 주소 (b) 시설 유형 카테고리(다음 카테고리 중 하나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행정/사무실 건물 (ii) 유통 센터/창고 (iii) 호텔/모텔/리조트 (iv) 제조사/공장/플랜트 (v) 의료/병원/요양시설 (vi) 다동(多棟) 캠퍼스/기지 (vii) 레스토랑 (viii) 서비스 센터 (ix) 매장 (x) 트럭/장비 야드 또는 (xi) 기타 다른 시설 유형 (c) 책임자 이름 (d) 책임자의 이메일 주소 (e) 시설이 개인 소유인지 임대인지 여부 (f) 해당 시설에 설치된 연료 공급 인프라 유형 (g) 시설의 연료 보급 인프라가 201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처음 설치되었는지 여부 (h) 해당 시설에 배정되거나 주기지를 두고 있는 트랙터가 있는 경우, 신고 의무자가 운행하는 트레일러의 종류
(3)	<p>각 차량 주기지별로, 차량 차체 유형, 중량 등급, 연료 유형별로 정보를 묶어서 보고할 수 있음</p> <p>해당인은 각 개별 차량별로 응답을 작성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차체 유형, 중량 등급, 연료 유형을 포함해야 함</p> <p>해당되는 경우, 해당인은 자신의 중개 권한 하에 배차된 차량을 별도로 보고해야 함</p> <p>응답 시, 각 차량은 응답당 한 번만 집계되어야 하며, 해당인은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각 차량 그룹의 차량 수 (b) 일일 주행 거리, 사용 패턴, 급유, 트레일러 견인 및 부서에서 지정한 기타 특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운영 특성을 갖춘 각 차량 그룹의 해당 차량 비율 (c) 이 차량 그룹의 일반적인 차량의 연간 평균 주행 거리 (d) 신고 주체가 해당 차량 그룹에 속하는 일반적인 차량을 취득한 후 보유하는 평균 기간 (e) 해당 차량 그룹에 대해 보고자가 직접 차량단 소유자인지, 아니면 보고자의 중개 권한을 통해 배차된 차량인지 여부 (f) 제(5)조에 따라 보고자가 선택한 분석 기간의 시작 및 종료 날짜
(4)	<p>해당인은 응답을 위해 일정 기간(예: 연간 또는 분기별 자료)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기간 동안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평균값을 내야 함</p> <p>예를 들어, 어떤 기관이 차량의 일일 주행거리를 산정하기 위해 연간 자료를 선택한 경우, 해당 연도의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누적된 연간 주행거리를 평균해야 함</p>

	<p>(a) 보고자가 통상적인 일일 운행에 관한 질문에 답변할 때 차량 이용률이 높은 기간을 더 잘 대표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짧은 분석 기간을 사용할 수 있음</p> <p>예를 들어, 계절적 업무량 변동이 있는 보고자가 성수기 중의 일주일 또는 한 달의 기간이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주 또는 월의 자료 기록을 평균하여 응답함</p> <p>(b) 대체 분석 기간이 사용되는 경우 보고자는 부처의 요청이 있을 시 그 이유를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p>
(5)	<p>OAR 340-257-0210(3)(a)부터 (f)까지의 규정에 따라 한 위치의 차량 그룹에 대해 보고된 정보의 경우, 보고자가 두 번째 장소에서의 운행이 첫 번째 장소에서의 운행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그룹에 대해 다른 차량 주기지에서도 해당 정보를 반복하여 제출할 수 있음</p>
(6)	<p>중개인은 계약에 따라 배차된 차량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예를 들어 중개인이 화물 운송을 위해 트럭을 고용하는 경우, 응답에는 해당 계약하에서 주행한 마일(miles) 수만 포함하면 됨</p> <p>알고 있는 경우, 중개인은 계약 외 주행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음</p>

○ (OAR 340-257-0230) 플릿 보고 기록관리 조항이 다음과 같이 신설됨

[표 13] 플릿 보고 기록관리 개정 세부 내용

구분	개정안
(1)	<p>OAR 340-257-0200에 명시된 대로 보고 의무자는 보고 기한 이후 5년 동안 해당 보고와 관련된 다음 기록을 모두 보관해야 함</p> <p>(a) 소유 중인 도로용 차량의 경우, 신고자가 OAR 340-257-0210에 따라 제출한 정보를 작성할 때 참고한 자료로서, 정비 기록, 차량 운행 로그, 주행계 기록 등 주행거리와 날짜가 명시된 기록 또는 기타 관련 기록</p> <p>(b)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보고자가 배차한 온-로드 차량의 경우, OAR 340-257-0210에 따라 제출한 정보를 작성할 때 신고자가 사용한 정보가 포함된 기록으로서, 배차 기록과 날짜, 계약서 또는 기타 관련 기록</p> <p>(c) 오리건에서 운영되는 각 소유 차량에 대한 차량 등록</p> <p>(d) 보고자가 OAR 340-257-0210에 따라 제출한 정보를 작성할 때 사용한 정보가 포함된 기록으로서, 개인과 체결한 계약, 하청 운송업자(subhaulers)와 체결한 계약, 또는 기타 관련 기록</p>
(2)	<p>OAR 340-257-0200부터 340-257-0220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는, DEQ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된 정보에 대한 설명 요청에 응답해야 함</p>

□ 340부 261 신차 대형 트럭 배출기준 신규 제정안

○ (OAR 340-261-0040) 캘리포니아 차량 배출기준 충족 요구사항이 다음과 같이 채택됨

[표 14] 캘리포니아 차량 배출기준 개정 세부 내용

구분	개정안
(1)	<p>2024년 엔지 모델 연도부터 시작하여 이후 모든 엔진 모델 연도에 대해, OAR 340-261-0060 '면제'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OAR 340-261-0050에 따라 캘리포니아 배출가스 기준에 인증되지 않은 신규 온-하이웨이 대형 엔진은 오리건주에서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해 인도할 수 없음</p>
(2)	<p>2025년 모델 연도 차량부터 시작하여 이후 모든 모델 연도에 대해, OAR 340-261-0060 '면제'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OAR 340-261-0050에 따라 캘리포니아 배출가스 기준에 인증되지 않은 신규 중형 또는 대형 트럭이나 트레일러는 오리건주에서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해 인도할 수 없음</p>

(3)	모든 중형 및 대형 트럭 및 트레일러 제조사와 딜러는 본 부에 포함된 판매 및 보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

○ (OAR 340-261-0050) 인용에 의한 통합 조항이 다음과 같이 신설됨

[표 15] 인용에 의한 통합 개정 세부 내용

구분	개정안
(1)	이 규칙에 통합된 캘리포니아 규정 조항을 적용할 때 "캘리포니아"는 "오리건"을 의미하고 "대기자원위원회(ARB)" 또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맥락에 따라 환경품질부(DEQ) 또는 환경품질위원회(EQC)를 의미함 단, 이 부문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거나 적용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는 예외로 함
(2)	제(3)조와 (4)조에서 인용에 의해 채택된 캘리포니아 규정집(CCR) 제13편 및 제17편의 조항들은 OAR 340-257-0050에 따라 인용에 의해 채택된 CCR 제13편 기준 및 요건에 추가되며, 이들과 호환됨 본 규칙의 의도는 OAR 340-257-0050에 따라 인용에 의해 채택된 기준 및 요건이 오리건주에서도 CCR 제13편 및 제17편, 본 규칙에서 인용에 의해 채택된 기준 및 요건에 의해 규제되는 온-하이웨이용 중형 및 대형 엔진, 차량 및 트레일러에 캘리포니아주에 적용되는 방식과 동일한 범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것임
(3)	배출 기준, 시험 절차, 보증, 보고, 시행, 리콜 및 기타 캘리포니아 규정은 인용에 의해 채택됨 2024년식 및 이후 모델 연도의 신규 온-하이웨이용 중형 및 대형 엔진과 2025년식 및 이후 모델 연도의 트럭 및 트레일러 제조사는 본 규정에 인용에 의해 통합된 CCR 제13편에 명시된 다음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제1956.8조(a)항 - (f)항 및 (i)항: 배기가스 배출 기준 및 시험 절차 - 1985년 및 이후 모델 대형 엔진 및 차량. 캘리포니아주 채택일: 2021년 9월 9일. 단, CCR 제13편 제1956.8조(a)(2)(F) "대중교통 기관 디젤 연료 버스 엔진 면제 요청"은 무시되며 인용에 의한 통합에 해당하지 않음 - 제1971.1조: 온-보드 진단 시스템 요구사항 - 2010년식 및 이후 모델 연도의 대형 엔진. 캘리포니아 채택일: 2021년 9월 9일 - 제2036조: 1979년부터 1989년 모델까지의 승용차, 소형트럭, 중형 차량, 1979년식 이후 모델의 오토바이 및 대형 차량, 이러한 차량에 사용되는 자동차 엔진, 2020년식 이후 모델의 트레일러에 대한 결함 보증 요건. 캘리포니아 채택일 2021년 9월 9일. - 제2121조: 벌칙. 캘리포니아 채택일 2021년 9월 9일. 단, 본 규정에서 "보건안전법 제43105조 위반"에 대한 언급은 무시되며, 본 규정에 인용에 의한 통합에 해당하지 않음 - 제2137조: 차량, 엔진 및 트레일러 선택. 캘리포니아 채택일 2021년 9월 9일. - 제2139조: 시험. 캘리포니아 채택일 2021년 9월 9일. - 제2139.5조: CARB의 대형(헤비-듀티) 사용 중 규정 준수 시험 권한. 캘리포니아 시행일 2003년 4월 21일. - 제2140조: 시험 결과의 통지 및 사용. 캘리포니아 채택일 2021년 9월 9일. - 제2166조: 일반 조항. 캘리포니아 채택일 2021년 9월 9일. - 제2166.1조: 정의. 캘리포니아 채택일 2021년 9월 9일. - 제2167조: 배기 후처리 장치, 온-보드 컴퓨터 또는 시스템, 요소수 분배기, 탄화수소 분사기, 배기 가스 재순환 밸브, 배기가스 재순환 냉각기, 터보차저, 연료 분사기 고장에 대한 의무 리콜 및 시정 조치. 캘리포니아 채택일: 2021년 9월 9일. - 제2168조: 배출가스 관련 구성품 고장에 대한 의무 시정 조치 및 리콜. 캘리포니아 채택일 2021년 9월 9일. - 제2169조: 의무 리콜 또는 시정 조치 계획. 캘리포니아 채택일 2021년 9월 9일. - 제2169.1조: 시정 조치 계획의 승인 및 시행. 캘리포니아 채택일 2021년 9월 9일. - 제2169.2조: 소유자 통지. 캘리포니아 채택일 2021년 9월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69.3조: 수리 라벨. 캘리포니아 채택일 2021년 9월 9일. - 제2169.4조: 시정 증명서. 캘리포니아 채택일 2021년 9월 9일. - 제2169.5조: 예비 시험. 캘리포니아 채택일 2021년 9월 9일. - 제2169.6조: 수리 담당자와의 소통. 캘리포니아 채택일 2021년 9월 9일. - 제2169.7조: 기록관리 및 보고 요구사항. 캘리포니아 채택일 2021년 9월 9일. - 제2169.8조: 기간 연장. 캘리포니아 채택일 2021년 9월 9일. - 제2423조(n): 배기가스 배출 기준 및 시험 절차 - 오프-로드 압축 점화 엔진. 캘리포니아 채택일 2021년 9월 9일. - 제2485조: 디젤 연료식 상용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기 위한 공기 중 독성 물질 관리 조치. 캘리포니아주 채택일: 2021년 9월 9일.
(4)	<p>배출가스 기준, 시험 절차, 보증, 보고, 시행, 리콜 및 기타 캘리포니아 규정은 인용에 의해 통합됨</p> <p>2025년형 및 이후 모델 연도의 온-하이웨이 중형 및 대형 차량과 트레일러 제조사는 인용에 의해 본 문서에 통합된 CCR 제17편에 명시된 다음 관련 기준들을 준수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5660조: 목적. 캘리포니아 시행일 2015년 1월 1일. - 제95661조: 적용례. 캘리포니아 시행일 2015년 1월 1일. - 제95662조: 정의. 캘리포니아 채택일 2021년 9월 9일. - 제95663조: 2014년형 및 이후 모델 중형 차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 및 시험 절차. 캘리포니아 채택일: 2021년 9월 9일.

관련 법령 및 표준

○ 법령

-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 - 자동차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13 - Motor Vehicles)
- 연방 청정대기법 (미국 연방 법전 제42편 § 7507) (Clean Air Act (42 U.S.C. § 7401))
- 연방 규정집 제40편 - 환경 보호 (40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Protection of Environment) - 40 CFR
-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전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HSC))